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금액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하여 유사 사무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함.

2. 주요내용

- 가. 현행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을 위한 표준 수수료 적용(12건)
- 나. 신규 수수료 항목 추가 및 표준 수수료 적용(41건)
- 다. 그 밖에 수수료 명칭 개정 및 항목 구분 정리 등(9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9조
- (2)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 (3)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나. 신규대비표 : 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증 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신설
나.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다.	의료기관, 약국(휴, 폐업)사실증명	1통	500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공부의 등초본 교부(지적관계 제외)			
1)	대장문서	1통	300	
2)	토지도면	1통	300	
3)	건물도면	1통	300	
나.	공부열람(지적관계 제외)			
1)	기본료	시간당	100	
2)	초과료	10분당	100	
다.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100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건	400	
나.	환지예정지 분할	1건	300	
다.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건	300	
라.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건	300	
마.	체비지 분할신청	1건	300	
바.	토지대금완납증명	1통	300	

구	분	기준	요금	비고
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증명	1건	300	
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 칼라발급 1,500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1건	800	
5. 회계에 관한 증명				
가.	원천징수공제증명	1건	300	
6. 주택에 관한 증명				
가.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건	300	
나.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주택	800	
7. 지가관련 확인원				
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필지	800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	신규	1건	5,000	
2)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	
나.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	
다.	주택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	
라.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	
마.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증명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건	법인 30,000 개인 20,000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	
3)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	전국적통일

구 분	기준	요금	비고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신설
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신설
2. 농수산 관계			
가. 내수면 어업 관계			
1) 낚시 어선업 신고	1건	2,500	신설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	9,000	전국적통일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	전국적통일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	5,000	전국적통일
5)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	신설
6) 내수면어업 연장 허가신청	1건	5,000	전국적통일
7)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	전국적통일
8)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	
9)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	
10)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	신설
11)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	명칭개정
12)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	신설
13)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500	신설
14)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	신설
15)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1건	800	신설
16) 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	신설
17)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1건	2,000	신설
18)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1건	1,000	신설
19)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	신설
20)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	신설

구 분	기준	요금	비고
21)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 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1건	1,000	신설
22)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	신설
23) 어선 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	
나.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	전국적통일
다. 농정 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전국적통일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라. 유통축산 관계			
1)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1건	20,000	신설
2)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신고	1건	10,000	신설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신청	1건	30,000	
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	
다. 석유판매업(용제 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라.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	1건	20,000	신설
마.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 판매소) 신고	1건	10,000	신설
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	1건	30,000	신설
사.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	신설
아.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신설
자.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신설
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	신설

구 분	기준	요금	비고
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	신설
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	신설
파.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	신설
하.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1건	1,500	신설
4. 건설 관계			
가.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나.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	1건	500	
다. 공작물등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라. 토석, 사력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마.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허가(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 1/1000	
바.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 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사.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	
아.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 허가	1건	1,000	
자.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	
차.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	1건	500	
카.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	
타.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	
파.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구 분	기준	요금	비고
하.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500	
거.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	신설
너.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	신설
더.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효력 회복 신청	1건	1,000	신설
러.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	신설
5. 문화·예술 관계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50,000	항목분리
나.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	전국적통일
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50,000	항목분리
라.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0	전국적통일
마.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	명칭개정
바.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15,000	신설
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신설
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건	20,000	명칭개정
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1건	5,000	명칭개정
차.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카.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	
타. 영화업 신고	1건	20,000	
파.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하.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	
거. 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	신설
너. 공연장 변경 등록 신청	1건	5,000	신설

구 분	기준	요금	비고
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신설
러.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0,000	신설
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	신설
6. 보건소 관계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	명칭개정
다.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라.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건	20,000	명칭개정
마.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전국적통일
바.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사.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전국적통일
아.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7. 체육시설 관계			
가.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나.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8. 환경 관계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9. 그 밖에 각종 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으로서 관련 법령이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안전 행정부 고시)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	1건	500	기타

신구대비표

[단위 : 원]

현 행		개정안	
수 수 료 명	수수료	수 수 료 명	수수료
<신설>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2,000
분사무소 설치신고	20,000	현행과 같음	10,000
<신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800
<신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800
<신설>		낙시 어선업 신고	2,500
어업 면허신청	1,600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9,000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7,500
어업 허가신청	1,000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지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5,000
<신설>		내수면어업 신고	1,000
어업면허 연장 허가 신청	1,000	내수면어업 연장 허가 신청	5,000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1,000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3,000
<신설>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1,000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 재발급	1,000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현행과 같음
<신설>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500
<신설>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500
<신설>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000
<신설>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800
<신설>		허가어업 재개 신고	1,000
<신설>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2,000
<신설>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1,000
<신설>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	2,000
<신설>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	1,000

현행		개정안	
수수료명	수수료	수수료명	수수료
<신설>		중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000
<신설>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3,000
수산물 가공업 등록 신청	2,000	수산물가공업 신고	1,000
비료생산업 등록	20,000	현행과 같음	30,000
<신설>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20,000
<신설>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신고	10,000
<신설>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포매소) 등록 신청	20,000
<신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포매업·특수판매소) 신고	10,000
<신설>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 신청	30,000
<신설>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 신청	20,000
<신설>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신청	10,000
<신설>		운송사업자 및 운송기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6,000
<신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500
<신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500
<신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500
<신설>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500
<신설>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1,500
<신설>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000
<신설>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000
<신설>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효력 회복 신청	1,000
<신설>		폐천부지 교환신청	1,000
종합·일반유원시설업 신규허가신고	50,000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수 료 명	수수료	수 수 료 명	수수료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현행과 같음
종합·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50,000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30,000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5,000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30,000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현행과 같음
<신설>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5,000
<신설>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0,00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20,00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현행과 같음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5,00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현행과 같음
<신설>		공연장 등록 신청	10,000
<신설>		공연장 변경 등록 신청	5,000
<신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20,000
<신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0,000
<신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등록증 재교부	4,000
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20,000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현행과 같음
부속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20,000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현행과 같음
안경업소 개설등록신고	20,000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0,000
치과기공소인정신청	20,000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0,000
그 밖에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타법령으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 (법령상 의무사항 제외)	500	그 밖에 각종 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안전행정부 고시)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 ③ 생략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12.9.21>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 ~ 2. 생략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 7. 생략	

종 류	표준금액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 16. 생략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 3항에 따 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 3항에 따 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9. 생략	
2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0조제 1항에 따 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 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조 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 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조 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 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 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종 류	표준 금액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8. 「낙시어선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낙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5. ~ 38. 생략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40. 생략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42. ~ 43. 생략	
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 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 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종 류	표준금액
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 판매업(부생연료유통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항공유통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52. 생략	
5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5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5. 생략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57. 「소하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58. 「소하천정비법」 제20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59. 「소하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 교환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60. ~ 64. 생략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66. ~ 70. 생략	

종 류	표준금액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 ~ 74. 생략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 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76. ~ 85. 생략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0. ~ 91. 생략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3. ~ 103. 생략	
104.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건당 1,000원

종 류	표준금액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11. ~ 122. 생략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6. 생략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9. 생략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종 류	표준금액
136. 생략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생략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생략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42. ~ 173. 생략	
1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6. 생략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승마시설의 신고 등) ①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 ⑤ 생략

□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1. ~ 5. 생략

② ~ ③ 생략